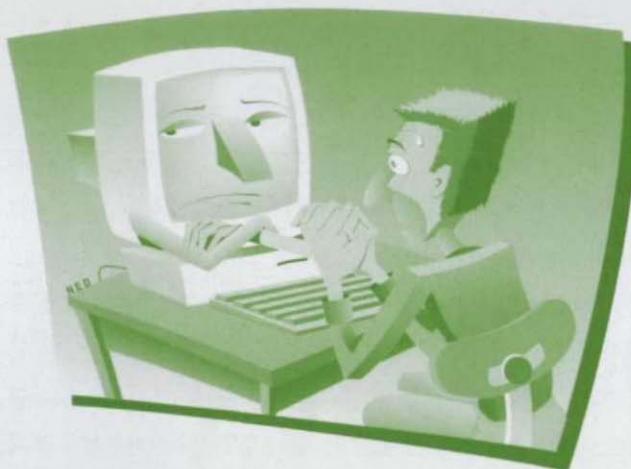


신속한 인증 기술 도입이 생존 조건

EC벤더, 사이버 증권사, 인터넷 은행 등 도입 추진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의 제정과 시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법 중 최근 시행과 더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주제로 그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고, 이들 법이 가져올 국내 전자거래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관련업계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다.

■ 신흥식/ 한국전자인증 대표

■ 김창연/ 한국전자인증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1998년 10월 OECD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지구상의 모든 상거래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수는 1997년 말 9,600만명에서 2005년이면 거의 10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전자거래*, 그 중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의 잠재력은 이미 그 위력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거래 주체간에 보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기존 거래방식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또 기존 법·제도 체계하에서는 전자거래를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해오던 한 사업자가 최근 인터넷을 통해 포도주를 팔기 위해 주류판매 신고를 하려고 관할 세무서에 찾아갔다가 현행 주세법 38조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국세청 고시(98-

21호, 98년 11월3일 제정)는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주류를 민속주와 국내 농민, 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술로 제한한다는 이유로 그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다.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규모가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시장규모는 올해 1천 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사이버 쇼핑몰도 400여개에 불과한 실정인데 반해 미국은 45만개가 개설돼 대조를 이룬다.

전자거래는 미래 경제활동의 근간으로 전자거래의 활성화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거래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전자거래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되면 무자료 거래 등 면대면 방식을 통한 불건전 거래관행과 부정부패 문제도 근절하는 효과가 있다.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전자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 최근 들어 전자거래라는 용어가 전자상거래를 대신해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전자상거래와는 달리 전자거래에는 계약 뿐 아니라 취소, 해지와 같은 단독행위, 그리고 채무의 승인이나 공탁의 통지와 같은 준 법률행위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대신 '전자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이므로 본 글에서도 전자거래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겠다.

1997년 7월 1일에 '전자상거래의 기본틀(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터넷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해야 하며, 시장원칙에 의거하여 정부는 법, 제도 정비 등에 그 역할이 국한되어야 하고 개입은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이 보장되어야 하고, 현재까지의 경제질서 유지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의 제정과 시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법 중 최근 시행과 더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위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고, 이를 법이 가져온 국내 전자거래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관련업계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다.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

7월 1일부터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정식 발효되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의 개념, 전자문서의 효력발생기준, 표준서식, 분쟁해결기준 등이 골격이고 전자서명법은 신분확인을 위한 전자서명의 법적효력과 인증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효력 문제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전자서명법은 주로 공인인증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서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서 관련업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내용은 크게 전자서명과 인증, 소비자보호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중 전자서명과 인증은 이번 두 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자서명법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의 자격요건과 업무, 의무 및 인증서의 내용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지닌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보호문제는 전자거래관련법에 있어서 하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협행법상 전자거래관여자 등의 책임과 의무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NP, ISP 등)의 책임과 의무, 인증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사이버몰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 제3자의 의무 등이 그 내용이다.

전자서명법에서는 인증시설, 기술의 구비 및 업무준칙 작성의무, 인증업무의 안전 및 신뢰성 유지 의무, 개인정보보호 의무,

소비자에 대한 인증서비스 관련 손해배상 의무 등 주로 인증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사이버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의무 등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거래당사자 등이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암호사용에 관해 기본적인 선언내용만 담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보아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합의하여 암호사용법의 제정을 준비중이다.

이 밖에도 전자거래기본법에는 다소 피상적이지만 정부는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국가적인 추진체제 정비를 조문화함으로써 범정부적 전자거래 촉진정책의 총괄조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다. 특히 전자거래 촉진과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전자거래표준원을 유관기관과 통합해 전자거래의 연구, 개발, 법제도 연구 및 표준개발 등을 담당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토록 했다.

이밖에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전자문서 표준화를 담당하는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토록 했다.

전자거래관련법의 시행과 이에 따른

국내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그간 종이로 만들어진 서류만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아 권리 및 의무를 가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전자서류 및 전자서명도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보험이나 주식을 살 때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했으나 이제는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전자인증 서비스를 이용, 자신의 비밀키(또는 전자서명 생성키)를 사용한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또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을 통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쇼핑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자거래가 이번 법의 시행을 계기로 구매는 물론 물류, 생산, 제조,

판매, 마케팅, 서비스 등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즉 그동안 적게나마 이루어져 왔던 소규모의 기업과 고객간 거래로 국한되었던 전자상거래가 규모가 큰 기업간 거래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존의 수기 서명 문서들, 예를 들면 공문서, 계약문서, 영수증 등이 전자서명 문서로 대체될 것이고, 그동안 보안상의 문제로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았던 기밀 문서들이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금융분야의 전자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금융분야는 서비스가 정보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전자거래에 매우 적합하다.

그러나 그동안 보안 등의 문제로 활용이 극히 제한되거나 미미했다. 이번 법의 시행으로 은행의 경우 고객의 돈도 인터넷으로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고, 증권회사의 경우 최근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사이버거래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도 신원확인과 전자서명이 가능해짐으로 해서 인터넷을 통한 견적산출과 청약이 가능해졌다.

이번 두 법의 핵심인 전자서명과 암호, 소비자보호가 갖는 의미는 한마디로 인터넷을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닦았는데 있다. 이로써 일반 소비자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나아가 거래규모가 큰 기업간 거래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EC 관련업계의 대응 전략

앞으로 일어날 환경변화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련 업계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인증기술적 측면에서 각종 솔루션 공급자들은 공개키 기반 하부구조(PKI) 기술을 자사의 솔루션에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증서 보급의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되는 부분이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그다지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미 외국 선진국의 경우에는 인증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사 솔루션에 인증기능을 첨가하는 노력을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현재 일반인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넷스케이프사의 메일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나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공개키 기반 인증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들은 시장에서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정부와 민간의 감시가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은 일본(민간지침), 프랑스(정부지침)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보호지침과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마련중인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이 문제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기반 전자상거래는 열린 환경인 만큼 접근도 용이한 반면, 고객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전자자금이체법과 같은 법이 아직 준비되지는 않아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금융분야를 축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등장할 전망이다. 앞서도 거론했지만 금융분야는 인터넷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하고 또 다른 사업영역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분야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민간업체에서의 암호기술 사용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 정책 지침을 수용,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해선 정부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으며 이 경우에도 정부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법원의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것은 전자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에서 암호기술 사용이 폭넓게 확산돼 앞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암호기술은 산업적 차원에서 보면 국제적 표준에 의거한 호환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외교, 국방 등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독자적 암호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국방과 같은 특수한 용도를 넘어 민간 차원에서의 암호기술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된다.

전자거래의 도입은 이제 모든 기업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이제 더이상 인터넷의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전자거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전자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나 제품개발업체 뿐 아니라 현재 도입했거나 미래에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법, 제도와 같은 인프라 구축 움직임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